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

2007.2.21 조례 제739호
(일부개정) 2007.05.22 조례 제 754호
(일부개정) 2010.12.29 조례 제 913호
(일부개정) 2011.06.07 조례 제1021호
(일부개정) 2012.12.04 조례 제1153호
(일부개정) 2013.11.27 조례 제1205호
(일부개정) 2015.03.25 조례 제1254호

관리책임부서 : 여성가족과
연 락 처 : 02-3396-541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 보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0.12.29, 2015.3.25.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.(개정 2010.12.29)
- 2.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(개정 2010.12.29)
- 3.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시설을 말한다.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- 4.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(개정 2010.12.29)
- 5.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(개정 2010.12.29, 2012.12.4, 2015.3.25.)
- 6."방과 후 보육"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10.12.29)
- 7"육아종합지원센터"란 「영유아 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(신설 2010.12.29) (개정 2015.3.25.)

제3조(책임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12.29)(개

정2015.3.25.)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4조(설치)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10.12.29)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1.6.7)

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그 중 5명은 서울특별시 구의회에서 추천한다.(개정 2007.5.22, 2010.12.29, 2011.6.7)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(개정 2012.12.4)
 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(개정 2012.12.4)
 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(개정 2012.12.4)
 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(개정 2010.12.29,2012.12.4)
 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(신설 2012.12.4)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한다.(개정 2012.12.4)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자 선정·취소에 관한 사항(개정 2012.12.4)
3.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2.12.4)
4. (삭제 2012.12.4)
5.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12.12.4)
6. (삭제 2012.12.4)
7.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8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(신설 2015.3.25.)
9.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(신설 2015.3.25.)
10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10.12.29, 2015.3.25.)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1.6.7)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-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- 제10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(개정 2012.12.4)

-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** (개정 2012.12.4)
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2.12.4)

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명칭)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한다.(개정 2012.12.4)

- 제14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.
 (개정 2011.6.7, 2012.12.4)
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12.29, 2011.6.7, 2012.12.4)
 ③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(이하"수탁자"라 한다)를 결정한다.(개정 2012.12.4)

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
제15조(수탁자 선정)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구보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신규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.(개정 2011.6.7)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6.7)

제16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(개정 2007.5.22, 2013.11.27.)

제17조(보육교직원)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(개정 2013.11.27.)

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되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, 2013.11.27.)

③ 삭제 (2007.5.22)

④ 원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.(개정 2012.12.4)

⑤ 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·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6.7, 2013.11.27.)

제1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
1.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개정 2011.6.7)

2.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(개정 2011.6.7)

3. 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(개정 2011.6.7, 2013.11.27.)

제19조(위탁계약)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,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(개정 2011.6.7)

② 삭제(2007.5.22)

제2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개정 2012.12.4)

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·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6.7)
-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.
-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1조(2개 이상의 수탁금지)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
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
- 1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5조에 해당하였을 때(개정 2013.11.27.)
- 2.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3.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- 4.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,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았을 때

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(개정 2011.6.7)

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, 변경, 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23조(지도감독)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, 경고,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,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(개정 2011.6.7)

제23조의2 (위반사실의 공표 등) (신설 2015.3.25.)

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, 위반행위,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,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고 한다)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.

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(신설 2010.12.29) (개정 2015.3.25.)

제2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3.25.)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「[영유아보육법](#)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다.(개정 2011.6.7, 2015.3.25.)

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1.6.7, 2013.11.27. , 2015.3.25.)

제25조(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5.3.25.)

1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(개정 2013.11.27.)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(개정 2013.11.27., 2015.3.25.)
5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(개정 2015.3.25.)
7. (삭제 2015.3.25.)
8. (삭제 2015.3.25.)
9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(개정 2015.3.25.)
10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(신설 2015.3.25.)
11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(신설 2015.3.25.)
12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15.3.25.)

제26조(구성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,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5.3.25.)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.(개정 2012.12.4 , 2015.3.25.)

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2.12.4. 2013.11.27.,2015.3.25.)

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5.3.25.)

제26조

2(운영위원회) (신설 2015.3.25.)

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, 보육교직원,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위탁계약)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재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·변경·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,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, 제23조,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.(개정 2011.6.7, 2012.12.4)

제28조 (이용료 등)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(개정 2015.3.25.)

-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5.3.25)
-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5.3.25.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2012.12.4, 2015.3.25.)
 - 1. 「[국민기초생활보장법](#)」에서 정한 수급권자
 - 2. 「[한부모가족지원법](#)」에서 정한 보호대상자
 - 3. 「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](#)」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
 - 4. 「[장애인복지법](#)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
 - 5. 세자녀 이상 가정
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29조(비용)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·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. (개정 2015.3.25.)

제5장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<개정 2010.12.29, 2012.12.4>

제30조(어린이집의 확대운영) 법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및「[여성발전기본법](#)」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할수 있다.(개정 2010.12.29, 2011.6.7,

2012.12.4)

제31조(어린이집의 설치)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,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,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·개축 또는 개·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
제32조(어린이집의 기준)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.(개정 2010.12.29, 2011.6.7, 2012.12.4, 2013.11.27.)

제6장 비용 <개정 2010.12.29>

제33조(비용의 보조 등)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개정 2010.12.29, 2011.6.7, 2013.11.27.)

1.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(개정 2012.12.4)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·교구비(개정 2012.12.4)
4.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(개정 2012.12.4)
5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
6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(신설 2010.12.29 , 2015.3.25.)
7.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8. 체육대회, 현장학습, 발표회 등 행사비(개정 2010.12.29)
9. 보육아동 급식비(개정 2010.12.29)
10.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개정 2010.12.29)

제34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(개정 2010.12.29, 2011.6.7, 2012.12.4)

1. 시설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때
2.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
3.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
4.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
5.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(개정 2010.12.29, 2011.6.7)

제7장 보칙 <개정 2010.12.29>

제3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12.29)

제36조(교육)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.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
제37조(시설의 평가)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.(개정 2010.12.29, 2012.12.4)

제3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10.12.29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,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(2007.5.2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12.2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6.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12.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1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위탁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기간이 3년인 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